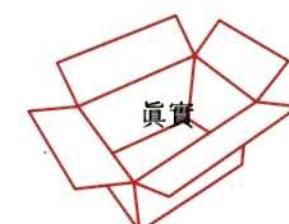


국가보안법 2차청문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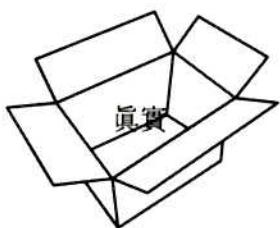
국가보안법 2차청문회 자료집

일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후 2~5시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주최 - 노희찬의원실 / 임종인의원실 / 최재천의원실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조작간첩 사건

NSL.10B.2



국가보안법 2차청문회 자료집 조작간첩 사건

목차

04 청문회를 열며

08 사건 개요

16 정권안보와 조작간첩사건

18 박경준 호소문

26 청문회 질의서

30 조작간첩사건의 실상

38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명단

42 정혜신의 국가보안법 진단

빨갱이 강박증

준법서약제 폐지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순서

사회 : 송호창 변호사

준법서약제 폐지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 14:00 ~ 14:10(10분) 개회 및 축사

● 14:10 ~ 14:20(10분) 참석자 소개 및 사건개요 소개

● 14:20 ~ 14:40(20분) 영상 상영 <추적60분> 1998.2.22. 방영

● 14:40 ~ 15:20(40분) 질의(최재천 / 임종인 청문관)

● 15:20 ~ 15:30(10분) 휴식

● 15:30 ~ 17:00(90분) 질의(정혜신 청문관)

● 17:00 ~ 17:10(10분) 정리의 말

● 17:10 폐회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조작간첩 사건

- 간첩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 청문회 대상사건

- 박동운 사건(81년 진도가족간첩단 사건)

○ 진술인

- 박동운

- 허현

○ 청문관

- 정혜신(정신과 전문의)

- 최재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임종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사회

- 송호창(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일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후 2~5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노회찬의원실 / 임종인의원실 / 최재천의원실

○ 주관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01 청문회를 열며 간첩은 이렇게 만들 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당신들은 아는가

영장도 없이 어디론가 끌려간 뒤
열흘이 가고 한달이 넘어도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아들 딸과 지아비 지어미를 찾아
이 기관 저 기관의 철문을 두드리며
안타까이 몸부림치던 우리들의 심사를

당신들은 아는가

그토록 헤매어도 찾을 길 없던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지아비 지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과 텔레비전의 이상스런 도표 속에
초췌한 몰골로 판박이 된 채
극악무도하나 좌경 용공 적색분자로 매도될 때
억장이 무너지던 우리들의 가슴을

당신들은 아는가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온몸을 짓이기고
엄청난 물을 강제로 먹이고 전기로 지저대는 등
인간 백정들한테 종철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종철이가 당한 고문보다 훨씬 더 악독스런 고문을 당한 끝에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지아비 지어미가
그렇듯 흉측한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까무러치다 솟구치고
솟구치다가는 까무러치던 우리들의 심사를…

당신들은 아는가

오로지 거꾸러진 민주의 깃대를 바로 세우고
찢어진 통일의 깃발을 곱게 기우려던
우리들의 사랑, 이 나라의 자랑스런 꽃들에게
5년 10년 20년 무기형을 때리는
가증스런 꼭두각시 재판놀음을 지켜보며
치를 떨던 우리들의 가슴을

당신들은 아는가

기나긴 세월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돌아올 줄 모르는
아들 딸과 지아비 지어미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강이 되고 바다가 된 우리들의 피눈물

외가 되고 산맥이 된 우리들의 원한을…

정신과로 간 국가보안법

1981년 3월, 일가족 7명이 남산 안기부에 끌려간다.
60일 동안 봉동이세례, 잠 안 재우기, 심지어 성기 고문까지 받는다.
결국 야만적인 고문에 못 이겨 5살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이후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한다.
그리고 간첩 혐의로 18년간 옥살이를 한다.

1981년, 일명 '진도 간첩단 사건'의 박동운은 그렇게 기막하고 어처구니없게 또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었다.
18년의 감옥살이 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7년.
그렇다면 현재 그는 국가보안법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일까?

오늘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신과전문의 정혜신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동운씨의 계속되는 고통과 상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 막연하게 인식돼 온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정신의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그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이 국가보안법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국가보안법이 남긴 심리적 내상

이미 몇 차례 박동운씨와 장시간의 개인면담을 가진 바 있는 정혜신은, 박동운씨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 부적절한 죄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인해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심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18년간의 부당한 옥살이로 인한 극단의 억울함과 그러면서도 어찌해볼 수 없었던 좌절감. 현재까지도 박동운씨는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도 앞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뒤돌아서면 나를 빨갱이로 생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 대인기괴증세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외형적으로 가장 권위있다고 여겨지며 동시에 무

소불위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이, 그 힘을 이용해 보호해야 할 평범한 국민 한 사람에게 시뻘건 인두로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은 결과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평범한 농협직원이었던 한 순박한 섬사람의 몸과 마음을 20여년에 걸쳐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공권력을 '사이코 패스'로 만들다

정혜신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사이코 패스' 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한다. 원래 '사이코 패스(psychopath)'란 정신병질자(精神病質者)란 의미로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겉으로는 일상생활도 잘 하고 멀쩡해 보여 심지어 가족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제심, 양심, 도덕성 등 통제기제가 미약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반도덕적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다.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들의 대표적인 공통점 중 하나가 사이코패스다. '사이코 패스'는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후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 한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 어떤 잔혹한 행동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혜신의 진단은 이렇다. "특정집단의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하에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몸과 마음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잔혹하게 짓이겨놓고 아직까지도 국가보위와 법률의 엄정성을 큰소리로 되뇌이는 대한민국 공권력은 사이코패스와 무엇이 다른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조작간첩",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근안의 고문으로 '간첩'이 된 함주명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2차 청문회에서 다루는 '진도간첩단 사건'의 박동운 역시 장기간의 불법감금,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불공정한 재판에 의한 최대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본 청문회는 이러한 "조작간첩"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며, 문제해결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본 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2005년 9월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02사건개요 박동운 사건 개요

신상 및 악력

1945. 9. 2. 전남 진도 출생
1964. 목포상고 졸업
1966-1969. 군복무
1969. 12. 풍국제지공업(주) 대구출장소 취직. 경리사원 근무
1972. 7. 고항 진도 농협에서 직원으로 근무
1981. 2. 하순경부터 농협 예금계장으로 재직

사건개요

사건명 : 행방불명 및 월북자 가족사건(일명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연행일 : 1981년 3월 7일
구속일 : 1981년 5월 8일
불법구금일수 : 63일
적용법조 :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수사기관 :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검사 : 안강민
1심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11. 3. 선고 81 고합 567. 사형
(담당판사 : 김원무, 김병재, 이행하)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1982. 3. 6. 선고 81노 3421. 무기징역.
(담당판사: 이정락, 박상용, 김훈)
상고심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92. 항소기각. 무기징역 확정
(담당판사 :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 박종창, 박준, 황석연
석방일 : 1998년 8월 15일(복역연수 18년)

1. 사건 개요

(1) 박동운은 농협 진도군지부 예금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1. 3. 7. 새벽 6시경 진도 자택에서 구속영장도 없이 정체불명의 남자들로부터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함) 남산분실로 연행되었고, 연이어 어머니 이수례(3. 7. 연행), 친동생 박근홍(3. 9.연행), 숙부 박경준(3. 9.연행), 고모 박미심(3. 14.연행), 고모부 허현(3. 14.연행), 숙모 한동자(4. 6.연행) 등 6명도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2) 박동운은 1981. 5. 8.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안기부 남산분실에서 6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북한 공작원인 아버지 박영준에게 포섭되어 2회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 탈출하고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혐의사실을 추궁당하였다. 검찰에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았다. 5. 8. 박동운, 이수례(어머니), 박근홍(동생), 박경준(숙부), 허현(고모부)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미심(고모), 한동자(숙모)는 석방되었다.

(3) 1심(서울형사지방법원 81 고합 567호)에서 박동운은 법정에서는 사건일체가 안기부 수사관들의 잔인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다른 6명 역시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981. 11. 3.경 1심법원은 기존의 자백을 기초로 박동운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함께 기소된 박경준은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수례 및 박근홍은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 허현은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 및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되었다.

(4) 항소심(서울고등법원 1982. 3. 6. 선고 81노 3421)은 1심에서 인정한 모든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형만 감형하였다. 박동운은 무기징역으로, 박경준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이수례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박근홍은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4년으로 각 감형되고, 허현은 항소기각되었다.

(5)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되어 박동운은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18년간 복역한 후 1998. 8. 15. 광복절에 가석방되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및 재판에서 인정된 유죄 범죄사실

가. 검찰의 공소사실

- 1963년 8월 하순 경 목포 자취방에서 남파 간첩인 부친을 처음 만나 북괴의 우월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북괴를 위해 활동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박근홍, 이수례, 박경준에게 이를 말하였다.
- 1965년 5월 중순경 다시 자취방으로 찾아온 부친을 만나 그날 밤 목포 뒷계 해안에서 공작선을 타고 월북하여 각종 간첩교육을 받고 한화 30,000원, 판전식 무전기 및 부속일체, 난수표 1조, 기본 암호표 등을 받은 후 5. 하순경 돌아왔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동생 박근홍, 모 이수례, 숙부 박경준 등에게 알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였다(공소장 모두사실)
- 1971년 9월 하순경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에서 다시 부친을 만나 10월 3일 북한 공작선을 타고 월북하여 17일간에 걸쳐 진술인의 군복무경력, 부대인원, 장비위치, 훈련내용 등을 보고하는 등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고, 10월 22일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후 10. 24. 다시 목포로 돌아왔다(공소사실 제1항~제3항).
- 진도로 돌아와서 농협에 취직한 이후 농협직원들을 포섭하여 1974년 2월 경에는 박옥재 등 7명을 모아 전암

회라는 계를 조직하고, 1975년 2월 경에는 위 계원을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된 광우회 등의 친목계를 조직하고 “월급이 적어서 못 살겠다. 집 한 캔도 장만하지 못하겠는데 돈 있는 놈은 땅을 사둔다”는 등 남한의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하면서 직원들의 불평, 불만을 유도하고, 1979. 12. 하순경 17·8명을 모집하여 ‘재진 고군면 향우회’를 조직하였다(공소사실 제4항 모두사실, 제6항).

○ 1976년 10월 중순경 진도읍 남동리 소재 도살장에서 남파된 부친과 성명미상의 일행과 회합하고, 다음날 농협 진도군 지부 앞길에서 박영준의 일행인 성명미상의 남자를 만나 광우회 회원 등 40명의 명단을 교부하였다(공소사실 제4항).

○ 1979. 8. 중순경 농협 진도군 지부 사무실 앞길에서 위 박영준의 심부름으로 온 위 성명미상의 남자로부터 농협진도군 지부 직원 인사기록카드, 78년 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 1부씩을 제출하라는 지령을 받고, 농협 사무실에서 서류금고 속에 들어있던 인사기록카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꺼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다음날 위 성명미상의 남자에게 전네주어 국가기밀을 수집, 누설하는 등으로 간첩하였다(공소사실 제5항).

○ 1980년 9월 초순경 숙부 박경준을 만나 중앙정보부에서 6.25 당시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조사한다는데 우리도 조사할지 모르니 관련 물품들을 빨리 없애버리고 조사받더라도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공소사실 제6항 후단).

나.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검찰의 공소장은 안기부에서 작성된 자술서와 동일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문은 검찰 공소장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으며,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3.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조작 등 불법행위

가. 불법 연행

박동운과 이수례는 1981. 3. 7.에, 박경준과 박근홍은 3. 9.에, 박미심과 허현은 3. 14.에, 한동자는 4. 6. 각 안기부에 연행되어 장기간 수사를 받았는데, 그 누구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연행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거나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1. 5. 8.까지 50~60여 일간 불법구금을 한 채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기간에 변호인 접견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나. 안기부의 고문 및 허위자백 강요

안기부 조사실에서의 63일은 박동운과 그 가족들에게 간첩단이라는 올가미를 씌운 처참한 고문의 과정이었다. 이에 대해 박동운은 <항소이유서> 등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 연행되자 안기부 수사관들은 먼저 옷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 입힌 후 “네 아비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모든 얘기를 다했다. 언제 네 아비를 만났고 언제 네 아비를 따라 월북했느냐”라며 더무니 없는 거짓말로 위협하며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63일 동안 계속 고문을 하였습니다. 고문 당한 것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벽에 붙은 세면기에 성기를 옮겨놓게 하고 신발짝으로 세차례 내려쳤습니다. 그때마다 까무라치면 찬물을 끼얹어 깨웠습니다. 그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당한 성기구타 고문으로 지금도 하체에 통증을 느끼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발가벗긴 채 철창에 손목을 묶고 라이타 불로 온몸을 지져 고통을 주었고 체모를 태워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발목에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무릎에 경찰끈봉을 올려놓고 발로 짓밟아, 하루에도 서너 차례 기절했습니다. 그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짓밟힌 상처가 지금도 왼쪽무릎에 남아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약전침대 봉등이로 엄청나게 구타당해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머리와 온몸을 약전침대 봉등이로 마구 때려 수사기간 중 입고 있었던 군복이 피로 물들었는데 수사관들은 온몸의 멍자욱을 없애기 위해 서대문구치소로 송치되기 일주일 전 쯤 매일 안티풀라민 맷사지와 온수 목욕을 시켰습니다.

매일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으로 몸은 피투성이만 남고 악에 바쳐 있었던 제가 하루는 “아버지가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다니까 나와 대질신문하면 내가 이적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런 고문만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발가벗겨 공중에 매달고 구타하면서 “만약 네가 시인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와 아내를 너와 같은 모습으로 옷을 벗겨 매달아 놓겠다. 그래도 시인하지 않으면 뱀굴에 처넣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저는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아내에게 수사관들이 엄청난 고문을 할까 두려워 허위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진술서를 쓰는 도중 “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안기부 수사관들은 “너 같은 놈 하나쯤 사살해도 염려될 것 없다. 여기가 어딘줄 아느냐. 잔소리 말고 불러주는 대로 유서를 쓰라”고 협박하여 부인 앞으로 보내는 유서를 강제로 쓰게 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을 헝겊으로 가린 채 권총으로 위협하며 안기부 밖으로 끌고 나가 표적삼아 사격연습을 하는 등 극심한 공포감을 주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다. 검찰 수사과정

(1) 박동운 등은 안기부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주임검사 안강민) 앞에서는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후에 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박동운의 고문조작 호소를 외면하였다.

(2) 박동운 등의 진술에 의하면, 안기부 수사관들이 5. 8. 박동운 등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재판하는데 부인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치소에 가 있을지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또다시 불러다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백한대로 검찰과 법정에서도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 박동운은 위와 같은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라 자포자기 상태에서 만약 검찰에서 결백을 주장하면 안기부에 다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을 것만 같다는 공포감에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3) 당시 조사실에서 검찰수사를 받을 때에도 안기부에서 박동운을 수사하고 고문하였던 안기부 수사관들 수명이 조사실 내에 들어와 박동운의 진술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4. 범죄사실의 조작 내용 및 불공정한 재판

가. 범죄사실의 조작

(1) 박동운이 1963년과 1965년 박영준을 만나고, 1965년 1차 월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공소장 모두사실)

(ㄱ) 박동운의 아버지 박영준은 박동운이 5살 때인 6.25 때 행방불명된 이후 전혀 소식이 없어 가족들은 모두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제사를 지내왔으며, 어느 누구도 박영준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다. 수사기관 발표에 의하면, 박영준이 남파간첩으로 수십 년 간 자유로이 진도를 드나들며 활동하다가 안기부에 붙잡혔다고 하나,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박영준이 안기부에 간첩으로 체포되었다는 점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남파 사실은 물론 박영준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자 박근홍(박동운의 동생)은 사건의 결정적 열쇠를 편 부친 박영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1993.4.28. 통일원에 북한접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제출과 함께 “63년 이후 박영준의 행적도 밝혀 달라”고 통일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일원은 제3국을 통한 접촉은 허가했으나 부친의 행적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접촉허가는 부친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3국에서 북한사람을 만날 경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박근홍 자신이 나서지 못했다.

(ㄴ) 공소사실에 의하면 박영준이 고3 때인 1963년에 박동운의 목포 자취방으로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하고, 목포에서 대학재수를 할 때인 1965년에 다시 찾아와서 다음날 공작선을 타고 월북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박동운은 목포 축동에서 자취한 이후 3차례나 방을 옮겨 다녀서 동생 박근홍을 제외하고는 어머니 이수례도 박동운이 사는 자취방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ㄷ) 박동운이 박영준을 따라 월북하였다는 목포 뒷계 해안은 각종 선박이 출입하는 번화한 항구로여기로 간첩선이 드나들었다고 말하면 목포시민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을 장소이다.

(ㄹ) 박동운에 의하면, 안기부에서 처음에는 박동운을 포함한 가족 7명 모두가 아버지를 만나 월북한 것으로 몰아 가다가 여의치 않자, 나중에는 박동운만 월북한 것으로 내용을 조작하고, 아버지를 만난 날짜도 처음에는 중3 때인 것으로 하다가, 수사가 끝날 무렵에는 당시 박동운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서 자기를 맘대로 동생 박근화가 백혈병으로 죽은 1963년에 박영준이 찾아온 것으로 바꾸는 등으로 짜맞추었다.

(2) 1971. 10. 3. 박영준과 함께 2차로 월북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간첩훈련을 받은 후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목포로 잠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공소사실 제1-제3항)

(ㄱ) 재판 과정에서 박동운은 위 시기에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써 ① 1971. 10. 3.은 추석이어서 성묘를 위해서 친구 이정천과 함께 진도까지 동행하였다는 점, ② 당시 직장인 풍국제지 대구출장소에서 10. 말까지 일하다가 그만 두면서 출장소 동료인 이택열과 함께 대구에서 전주, 이리까지 함께 동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요 한 증인이었던 이정천, 이택열, 이송열은 모두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법원은 박동운의 주

장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 확정 후 위 증언들은 안기부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사실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ㄴ) 1981. 10. 5.경 1심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택열은, ‘박동운과 동행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부인하다가, 변호인이 재차 “안기부에 다녀온 일이 있느냐”고 묻자, 증인으로 나오기 며칠 전인 1981. 9. 말경 안기부 대공상담실에 가서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받았다고 대답하였다.

(ㄷ) 당시 출장소장이었던 이송열은 1981. 5. 18. 안기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박동운이 1971. 9. 말경에 풍국제지를 사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당시 박동운 두 번째 월북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항소심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1998. 2. 방송된 <KBS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송열은 “박동운이 추석 지내려 진도를 다녀온 뒤, 농협에 취직되었다며 사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공소사실상 2차 월북시기로 되어 있는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박동운이 대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ㄹ) 한편, 최성자(이수례의 친구)는 “71. 10. 3. 밤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이수례의 집에서 박동운을 만났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증인 김충현(이웃주민, 진도군 진도읍 통정리 14-9)에 따르면, 10. 4. 이수례의 집에서 박동운을 만나, 당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딸 이옥영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ㅁ) 확정판결 후에, 당시 박동운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박동운이 한 때 거주한 바 있는 풍국제지 대구출장소장 이송열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71. 10. 14. 자로 박동운의 주소지가 ‘본적지로 퇴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세대별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을 퇴거한 것으로 변경하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했으므로, 위 날짜에 박동운이 북한에 있을 수가 없었고 대구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 박동운이 1979. 8.경 성명미상 남자에게 농협 인사기록카드 등을 복사한 후 건네주어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공소사실 제 5항 : 회합, 국가기밀 수집 · 누설)

(ㄱ) 박동운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박동운에게 농협의 업무내용 및 직원현황 등을 물어보아서 대답한 것을, 안기부 수사관들이 자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농협의 인사기록카드나 대차대조표 등이 국가기밀이라고 공소한 사실 자체가 염밀성을 상실한 것이다.

(ㄴ) 위 공소사실이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로서, 진도농협이 제출한 ‘업무용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면 1979. 8.경에는 진도 농협에 전자복사기가 도입되지도 않았고, 1984. 5. 10.에야 전자복사기가 도입된 것이 밝혀졌고, 1979. 당시 박동운과 농협에 함께 근무했던 이원기씨도 1979. 8. 당시 진도군 농협에는 전자복사기는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박동운이 1974, 75년에 걸쳐 진암회, 광우회를 조직하고 불평불만을 유도하여 목적을 수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공소사실 제4항 모두사실, 제6항)

(ㄱ) 박동운에 의하면, 이 부분 역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박동운에게 평소 계모임 한 것은 없느냐고 물어 몇몇 모임

을 이야기하였더니, 위 계모임을 불평분자를 포섭하기 위한 지하당으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 이에 대해 계모임에 참석하였던 김수하씨와 전민범씨(각 당시 농협 직원)는 “사실무근으로 박동운이 조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사실을 반박했다.

라. 불공정한 재판

(1) 고문 및 영장없는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고문 및 영장없는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박동운은 안기부와 검찰에서는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전면 부인하였고 안기부에서의 자백은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 검찰에서의 자백은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해 심리적인 강압상태가 연장되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공판조서 어느 곳에도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없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1차 공판조서,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2) 박동운 측의 신체감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1982. 2.경 박종창 변호사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수사에 의해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조작되었다며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 박동운 가족 5명에 대한 신체감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재판부가 고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신체감정 조차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3) 터무니없는 압수물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검찰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라면 압수물로 지귀, 수첩, 사진첩, 인사기록카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 압수물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위 압수물의 면면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ㄱ) 자귀 1자루 : 사건 초기 안기부는 사건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증거물로 난수표, 무전기, 권총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 증거물은 대부분의 간첩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기부는 일단 언론에 발표부터 한 후 박동운에게 난수표와 무전기를 숨긴 곳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고문하였다. 그러나 박동운이 난수표, 무전기의 개념도 몰라 사실조작이 어려워지자, 안기부는 자귀(망치의 일종)로 난수표와 무전기를 부셔버렸다면서 때려 부신 ‘망치’를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결국, 언론발표는 거짓임이 드러났고, 난수표나 무전기 대신 자귀가 간첩의 증거가 되었다.

(ㄴ) 수첩 1권 : 압수된 증거물 중 ‘수첩 1권’은 박동운이 대구에서 일할 때부터 사용하던 것으로서, 수첩에는 박동운이 월북하였다는 1971. 10. 경에 박동운이 풍국제지에 근무한 사실이 쓰여 있어서, 간첩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박동운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를 월북을 은폐할 목적으로 풍국제지 근무 기간을 허위기재한 증거로 몰아 갔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의 물증으로 삼았다.

(ㄷ) 사진첩 1권 : 사진첩은 부친 박영준의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첩이었는데, 박동운 등이 아버지를 흠토하면서 그 업적을 가족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이 제출한 것이었다. 돌아가신 선조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사진첩은 어

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물건인데, 그것이 간첩죄의 증거가 되었다.

(4) 재판부는 박동운의 고문조작 호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심 공판 중 박동운은 일관하여 고문조작에 의한 허위자백을 호소하였으나, 재판장은 ‘안기부와 검찰에서 자백하여 놓고 왜 이제 와서 만소리냐’라고 할 뿐, 고문조작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동운에 대한 신체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등 고문조작 호소에 눈을 감아버렸다.

한편 1994.7.7. 박동운은 고문에 의해 자신들의 사건이 조작되었으므로 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지검에 고문한 수사관들을 고소했다. 서울지검은 이 고소사건에 대해 94.8. 고문범죄의 경우, 7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범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했다. 1995.1. 박동운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각하되고 말았다.

03정권안보와 조작간첩사건 박동운 사건 배경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항쟁을 학살로 응징하면서 등장한 소위 신군부세력에게는 어떠한 법적 도덕적 정통성도 찾기 어려웠다. 이같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저항운동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란 폭압적 통치와 탄압 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조작, 그리고 악역을 담당할 법과 기구가 필요했다.

먼저 신군부 세력은 광주항쟁 진압 직후인 80년 5월 31일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한다. 국보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9천명이 넘는 규모의 공무원 숙정이었다. 이는 신군부의 국가기구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이들을 죄인시하여 자신들의 개혁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계엄사령부는 6월 17일 부정축재, 국기문란, 시위주도, 배후조종 등의 혐의로 정치인, 교수, 목사, 언론인, 학생 등 392명을 징계하였다. 7월에는 『창작과 비평』, 『씨앗의 소리』, 『뿌리깊은 나무』 등 172개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8월에는 폭력배 일제검거를 실시되어 이를 만에 1만 6,599명이 체포되었다. 그 와중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작업을 거쳐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가운데 통일주최국민회의에서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승려들이 연행되는 혼란 속에 10월 23일에 확정된 헌법에 따라 또다시 정상적인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이하 입법회의)'가 설치되었다. 입법회의가 한 최초의 작업은 811명의 구 정치인의 활동을 8년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외에도 입법회의에서는 집시법, 언론기본법, 공정거래법,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 등 강권통치를 보좌할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시도되었다. 종래

반공법의 독소조항을 흡수통합한 국가보안법의 전면개정도 이때 이루어졌다. 중앙정보부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었다.

마침내 1981년에 들어와 정식으로 국회가 들어서고, 대학졸업정원제가 발표되고,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한 뒤인 2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한다. 제5공화국은 집권 기간 내내 신군부의 폭력적 등장과 정과 국보위의 통제주의적 폭력성을 수미일관하게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체제정비에 나서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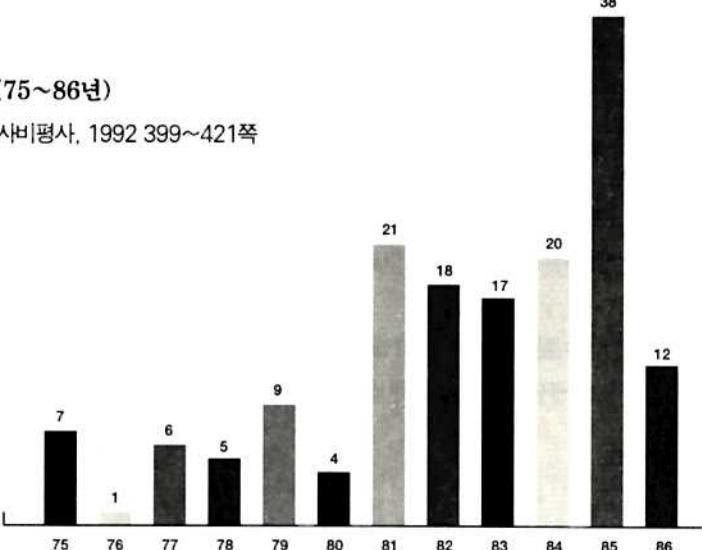
제5공화국 초기 폭압적 체제 정비의 악역을 받은 것은 보안사령부였다. 당시 안기부 위에는 무소불위의 보안사가 있었다. 그야말로 '옥상옥'이었다. 보안사는 12.12와 5.18 광주항쟁 진압 등을 주도했던 제5공화국 정권 창출의 주역으로 안기부, 검찰, 경찰 등을 지휘했던 권력의 핵심기구였다. 본래 보안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과 독대하거나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일반적인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채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더욱이 군 수사기구이면서도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일삼고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고문과 조작 등을 자행하여 인권유린의 산실로서 지탄을 받았다. 특히, 전두환 정권 초기의 보안사 위세는 안기부가 보안사의 감독을 받으며 보안사의 정치공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대단했다.

이렇게 보안사와 안기부는 제5공화국을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시대'로 만든 주역이었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정권안보를 위해 충성경쟁을 벌였던 두 기구에 의해 국가보안법은 일상적으로 남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문과 용공조작의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그런 두 기구가 합작하여 정권 초기에 주력했던 것이 다름 아닌 '간첩 색출'이었다. 간첩사건이야말로 정권의 안정에 가장 긴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래 <그라프>를 통해 81년부터 간첩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년에 가장 많은 간첩사건이 발표되는데, 당시는 김대중의 귀국, 1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신민당 중심의 야당통합 합의 등 정치적으로 매우 주요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였다.

이처럼 전두환 정권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권안보를 위한 대국민선전용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간첩사건들은 일반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정치적 국면에서 발표되곤 하였던 것이다.

<그림1> 간첩사건 발생 전수(75~86년)

출처 : 박원순, 국가보안법2, 역사비평사, 1992 399~421쪽



그리고 대부분의 '간첩' 사건에 고문 시비와 조작 의혹이 뒤따랐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던 '간첩' 사건 당사자들의 진실규명 요구는 이내 묻혀 버렸고, 그야말로 정보기관에서의 진술서에 바탕한 신속하고 간명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그들이 장기수의 명예를 써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 1981년에 발생한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은 이러한 비극의 서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04호소문

박경준호소문

이 글은 진도가족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경준 씨가 출소한 이후 쓴 글이다.
이글은 민가협 발행, 〈장기복역장기수 실태자료집〉에 실려있다. 이글을 쓴 박경준 씨
는 1998.5. 사망하였다.

본인은 간첩죄로 7년형을 선고 받고 1988.5.18 광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자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 가족 5세대는 아무죄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1981.3.9을 전후로 해서 안기부로 강제 연행되어 60여일 불법감금을 당한 채 밤낮없이 무서운 살인적 고문과 공포에서 6.25때 서울에서 행방불명 되어 생사도 모르는 가공인 박영준 (본인의 형)이 남파간첩으로 내려와 가족과 접선하고 고정간첩을 하였다고 허위조작된 '진도 가족 고정간첩단사건 (81년 7월 31일 일간지 보도)' 제하의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그중 박동운은 행방과 생사조차 모르는 박영준(부친)을 따라 두번이나 북에 갔다 온 것으로 조작하여 지금도 무기수로 광주교도소에서 억울하고 한많은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남파간첩으로 조작된 박영준은?

박영준(본인의 형)은 6.25 당시 서울에서 가족과 살다가 9.28수복 혼란기에 가족과 헤어지고 이수례(박영준의 처)는 어린이들 (박동운 당시 5세, 박근홍 당시 3세, 박근화 간난이)을 거느리고 고향 진도 땅에 피난을 내려온 이후 38년이 지난 오늘까지 박영준에 대하여 행방이나 생사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행방불명된 가공인 박영준을 남파간첩으로 조작하였습니다. 만약 안기부 조작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박영준의 소재를 적십자사나 어떠한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확실히 파악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작된 공소장에 의하면 7차례나 남파하여 가족들과 접촉하고 박동운을 데리고 2번이나 월북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고문에 의한 날조입니다.

* 강제연행

본인은 신병(간장염)치료로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1981.3.9 새벽에 낯모르는 잠바차림의 청년 2명이 찾아와 안기부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박영준(본인의 형)에 대하여 알아볼 일이 있으니 진도경찰서까지 가지고 하면서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는 본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승용차에 강제로싣고 진도읍에 도착하여서는 경찰서로 가지 않고 광주고속터미널로 직행하였습니다. 거기서는 차안에서 수사관이 버티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2,3명 나타나더니 바로 광주고속버스를 태우고 광주 도경까지 가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 하였습니다.

광주로 가는 도중 간장염 통증으로 몸부림을 쳤으며 광주에 도착하니 웬일 입니까? 광주도경이 아니라 서울행 광주고속터미널로 해서 서울행 광주고속을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얼마후에 내리라고 하기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내리니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으며 지하실로 끌고가더니 어떤 방에 들쳐놓고 군복으로 갈아입히더니 첫 인사가 야전침대 봉동으로 병든 여원 몸을 치면서 불법적인 비극의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기부에 연행된 가족명단〉

연행자성명	박영준과의 관계	당시 직업	형기	출소일	불법구금일(안기부)
박동운	장남	진도군 농협대부계장	무기	1998.8.	63일
박경준	동생(남)	고군면 부면장	7년	만기(1988.5.18.)	61일
이수례	처	농사	4년	만기(1985.5.18.)	63일
박근홍	차남	수원 전매청	3년6월	만기(1984.11.16.)	61일
허현	매제(박미심의 부)	새마을 지도자	집행유예		56일
박미심	동생(여)	불구속			56일
한동자	제수(박경준의 처)	불구속			32일

* 고문으로 얼룩진 악몽 60일

그곳은 첫인사가 고문인 모양입니다. 한수사관이 야전침대 몽둥이를 뽑아들더니 엎드리라고 하여 무차별 난타하면서 영문도 모르는 형 박영준을 따라 북에 몇번 갔다왔느냐. 무전기, 난수표를 내 놓아라, 암호문을 대라고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 박영준이 6.25때 서울에서 행방불명 되었다는 소식을 형수 이수례를 통하여 들은 이후 지금까지 행방과 생사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너의 형수 이수례나 조카 박동운, 박근홍이는 이미 이곳에 잡혀와서 다 털어 놓았는데 교활한 수작을 한다고 허벅지, 장단지등을 치면서 숨쉴 틈도 없이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문받다가 죽으면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간단히 끝나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진실인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60일간이나 같은 일로 고문을 당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방법만 있다면 숨을 끊어서 이 극한적 절박한 고통을 잊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저희가 당했던 고문의 실상을 기술합니다.

- 물고문 : 돼지처럼 팔과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달아매어 얼굴에 물수건을 덮어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니 숨통이 막히어 여러 차례 기절하였고 그때 삼월달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인데 간장염으로 몸은 가죽과 뼈만 앙상한 상태에서 발가벗긴 몸을 거꾸로 달아 매어 놓고 십여일 이상 계속되는 물고문으로 꼭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 목욕탕고문 : 팔을 뒤로 묶어 놓고 마치 털 벗긴 돼지를 물속에 넣듯이 목욕탕에 집어 넣어서 질식하여 허덕이다 그 이후 일을 모릅니다. 나중에 정신이 회복되어 보니 목욕탕 옆에 뉘어 있는 제 바지에는 배설물이 흥건히 쌓여 있었습니다.

- 수도물 샤워 : 팔을 뒤로 재껴 묶어 놓고 샤워로 얼굴 전체에 소방수가 소화작업을 하듯이 쏘이대는 통에 숨통이 막히고 얼굴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 손바닥 발바닥치기 : 몸을 묶어 놓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몽둥이로 얼마나 난타하였던지 가죽이 부르터서 물집이 일고 가죽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 다리문지르기 : 몸을 의자에 묶어 뼈를 방망이로 문질러서 가죽이 벗겨지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 잠안재우기 : 의자를 들게 하거나 쟁반 또는 컵을 머리에 이게 하거나, 양팔을 벌리고 벽에 붙게 하는 등 며칠을 잠을 재우지 않고 그들은 교대하면서 고문을 가하여 심신이 탈진하여 몽롱하여 쓰러졌습니다.

- 굶기기 : 밥을 주어 먹으려고 하면 빼앗아가면서 몇날을 굶기었으며 배고픔과 식욕을 교묘히 이용한 비인

도적 만행을 하였습니다.

- 남자성기고문 : 남자 성기에 종이꼬깔을 써워서 불을 붙혀 음모와 살갗이 타는 내음이 코를 찔렀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요도를 후벼대는 통에 창자까지 미치는 통증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 심야에 소총 위협 : 심야에 어디론가 끌고가서 소총을 겨누면서 만약 검사와 판사 앞에 가서 안기부조서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안기부로 끌어다가 쏴아 죽여버리고 탈수로 인한 포사로 처리하면 간단히 끝난다고 위협하였습니다.

- 여자 성고문 : 본인의 처 한동자와 출가한 여동생 박미심을 1981.3 하순경에 안기부로 강제 연행 전나체로 벗겨놓고 방망이로 음부등 여러곳을 구타하였습니다.

- 몸뚱이가 통나무처럼 : 날마다 구타등 고문으로 몸뚱이가 통나무처럼 부어서 옷을 벗을 수가 없었고 이동할 때는 굼벵이처럼 몸을 굴려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 대변이 염소똥처럼 : 날마다 계속되는 실인적 고문에 시달려서 대한 가뭄처럼 목이 타고 대변이 막혀서 손가락으로 파내어보니 염소똥처럼 검고 딱딱하였습니다.

- 동네북처럼 : 못 수사관들이 조사방에 들르면 그저 지나치지 않고 동네 북처럼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구타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 쇠고기 치료 : 너무도 심한 고문으로 몸이 부으면 안티프라민을 몸뚱이에 범벅칠을 하였고 솜뭉치처럼 부은 벌에 쇠고기를 얹어 썰어서 붙이고 붕대로 감아놓고 하룻밤을 새고나니 부은 살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 사지를 책상다리에 묶다 : 양팔과 다리를 쇠고랑을 채워서 책상다리에 묶어놓고 고문을 하였습니다.

* 작문쓰기에 시달리다.

날마다 거짓작문 쓰기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본인의 일생 일대기를 비롯해서 연애경험, 여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관이 과제를 만들어 제시합니다. 즉 북에 다녀온 기행문, 평양의 표정, 대동강 인상, 집단농장, 공장지대, 박영준과 접선경로, 간부들과의 회합, 무인포스트 (수사관으로부터 처음 들어서 알았음) 활용, 무전기 모형그림, 난수표 모형그림등 미리 힌트를 간간히 흘리면서 기상천외의 작문을 써내라고 강요합니다.

고문에 못이겨서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티면 벼릴수록 악랄한 고문이 추가되고 버틴 만큼의 공간을 고문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시키면 빨리 응해야 하나라도 덜 맞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그들에게 굳복당하고 말기 때문이지요.

* 조서작성의 실태

고문은 끌려온 제물이 수사관들의 요구대로 고분고분 응해 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는 수단과 방법이겠지요. 60여일간 매일 같이 고문으로 날이 새고 지고 하는 동안 아무 험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수사관들이 어떤 책자(조서)를 놓고 참고하면서 조서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임의대로 작성한 조서를 읽어 주면서 본인더러 받아 쓰게 한 것이 소위 피의자 진술조서입니다.

모두가 날조된 거짓이어서 차마 쓸 수가 없어 한숨만 몰아쉬면서 우두커니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순간 불벼락 같은 고문이 휘몰아 칩니다. 어쩔수 없이 냉난간 상태에서 쓰라는대로 썼습니다. 그와 같은 수법으로 작성된 조서는 합동 회의에서 모순점을 손질하여 가지고 와서 다시 진술조서를 쓰게 합니다. 이와 같이 수정작업을 수회 반복하여 여러날 걸려서 작성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받았으나 수사관 말이 무엇을 꼭 감추어 놓고 털어놓지

않는 내용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얼버무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 칼자루를 훤자

무수한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면서 수사관들이 하는 말이 칼자루를 훤자하는 자기들이니 일단 자기들 손아귀에 잡혀오면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꼼짝 못하는데 하물며 촌놈들은 칼자루 훤자의 처분이나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변호사를 다 동원해도 끄덕없으니 차리리 검사와 판사앞에서 순순히 자백하면 형제간의 일이니 동정을 받을 것이나 만약 부인하면 다시 안기부로 끌어다가 몇년이고 썩혀 버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칼자루를 훤자는 불가능이 없다고 자신만만 하였으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요술장이들로서 폭력을 주력으로 적정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많은 간첩죄를 양산한 것이 현실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 가족들의 수난

본인의 처 한동자와 출가한 여동생 박미심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수창 진도경찰서로 끌고가서 고문하였고 1981.3월 하순경 안기부로 끌고가서 1981.5.8까지 무려 한달반동안 불법감금해 놓고 나체로 성고문과 무수한 구타로 골병이 들어 그해 농사도 파농하였으며 친족 박원택씨도 안기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였고 그 위 수많은 친척들이 심문을 당하여 우리를 적대시하고 원수지간을 만들었으며 아이들이 학교와 주변에서 간첩새끼라는 멸시와 구박. 조롱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광주로 전학을 시켰으며 우리집 주변 담구멍에 도청 장치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둑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겨 고립되었고 조그마한 일에도 간첩새끼들이라는 선제 공격으로 매도하여 기를 펼 수가 없어 죽음의 삶을 이어 갔으며 어느날 출지에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자식들을 87세된 노령의 조부와 함께 부모의 생사와 행방도 모르고, 공포속에서 날마다 낯선 사람들의 가택 수색과 영문도 모르는 심문 등 비인도적 수난으로 암울한 나날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웠으며 가정은 파괴되어 쑥밭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살고 있는 조카 박동운이 겪고 있는 수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섯살때 해어진 부친 (박영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6.25이후 아버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데 2차례나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 박동운이 당한 고문의 과정은 본인보다 훨씬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농촌 가정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다 가정마저 파탄 당한데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조작돼 7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죄없는 옥살이를 무기한 해야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 증인과 증거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적, 물적 아무증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고문으로 조작된 조서 뿐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 한동자 (박경준의 처) : 1981.3.9 새벽에 남편 박경준이 낯선 사람에게 끌려간 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공포속에 있는데 수사관들이 한동자를 진도경찰서로 연행하여 고문을 하면서 남편 박경준이 북에서 내려온 박영준 (시숙)과 만난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들은대로 말하라는 심문을 받고 절대로 그런일이 없었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실을 말하였으나 서너차례나 끌려가 같은 방법으로 고문을 받았고 1981.3하순경 강제로 서울 안기부로 끌려가서 발가벗겨 놓은 채 성고문을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심문을 받았으나 계속 부인하자 날마다 더해가는 살인적 고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사관들이 임의로 작성한 조서를 불러주면서 받아 쓰라고 하기에 어쩔수 없이 고문에 못이겨서 쓴

것이 한동자의 진술서이며 내용인즉 남편 박경준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날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문으로 조작된 진술서를 쓰게 하고 앞으로 누가 묻더라도 꼭 진술서대로 답변하라고 하면서 만약 판소리를 지껄이면 다시 안기부로 끌어다가 더 가혹한 고문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엄포하는 통에 순진한 농촌여자로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시키는대로 따랐다고 하며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고 서울에 와 있을 때 안기부 수사관이 어떤 철조망이 쳐진 곳으로 끌고가서 검사와 판사앞에서 안기부에서 작성된 진술서대로 시인하지 않으면 또 다시 안기부로 끌어가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였음.

- 박미심(허현의 처) : 1981.3 하순경 영문도 모르고 안기부로 끌려가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성고문을 당하였고 고문에 못이겨서 생사도 모르는 박영준(오빠)을 가족들과 만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관이 임의로 조작하여 놓고 불러주는대로 받아 썼다고 하며 검판사 앞에서도 꼭 진술서대로 대답하라는 엄한 단속을 받고 1981.5.8 40여일만에 풀려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위장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음.

- 박화룡(박영준의 부친, 당시 87세, 현재 94세) : 1심때 증인으로 출석한 박화룡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날 갑자기 박경준(아들)과 한동자 (자부)가 없어진 후 소식도 모르고 공포속에 잠겨 있는데 낯선 청년 2명이 집에 와서 집 안 곳곳을 뒤지고 부엌과 퇴비사의 재까지 파헤쳐 본 다음 마루에 걸터앉아 무엇을 쓰더니 박화룡을 오라고 하여 손을 끌어다가 날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기부 조서에 첨부된 박화룡의 진술서로 수사관이 자의로 조작한 것이며 내용은 1958년 여름에 박영준이 집에 찾아와서 만나보았다는 날조된 진술서입니다. 그날 박화룡은 법정에서 "6.25 때 행방불명되어 산지 죽은지도 모르는 내아들(박영준)을 누가 보았단 말이냐? 내 아들을 본 사람이 있거든 지금 여기 내놓아라."고 절규하고 지팡이로 법정 마루바닥을 치면서 울분하는 통에 방청석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음.

- 이택열 (박동운의 회사동료) : 이택열은 박동운의 직장이었던 풍국제지 대구출장소 동료인데, 박동운이 10.말까지 풍국제지 대구출장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면서 이택열과 함께 대구에서 전주, 이리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따라서 이택열은 박동운이 1971.10.2차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밝혀줄 결정적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택열은 법정에서 "박동운과 동행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부인하다가, 변호사가 재차 "안기부에 다녀온 일이 있느냐"고 묻자, 법정증인으로 나오기 수일전인 1981.9.말경 안기부 대공상담실에 가서 증언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조사받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안기부의 협박 등으로 사실에 반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박선준 (박동운의 5촌 숙부) : 박선준은 1971년도 추석에 박동운이 대구에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함께 성묘를 하고 몇일 쉬었다가 대구로 올라간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음. 그외 풍국제지 대구출장소 소장 이모씨와 같이 근무한 이모씨 (이리사람)등 우리가 신청한 증인들은 모두 수사관들이 사전에 찾아 다니면서 공작을 하였다고 증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 간첩죄의 허구성과 모순성

- 지하조직 : 동창회 갑계 친목계 등 계에 가입한 계명, 계의 목적, 계원명단을 적어 내라고 하여 써 주었더니 그중에서 상포계, 장고계가 지하조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공작금 : 1979.3조카 박근홍 결혼시에 예식장비라도 보태 쓰라고 건네준 것이 공작금으로 변형되었습니다.

- 국가기밀탐지 수집 : 1977년 여름에 서울가족계획연수원 옆 부면장 가족계획 세미나에 참석하고 귀가시에 수원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조카 박근홍을 찾아가 객고를 위로하고 점심을 먹고 온 사실을 국가기밀 즉, 수원에 경기도청과 경찰국, 미군부대 비행자, 공장지대 등이 어디있는가를 탐지 수집하였다고 날조하였습니다.

- 면사무소의 기밀 : 수사관이 면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써내라고 하여서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병 계별로 관장하는 업무를 적어 주었더니 나중에 그것이 기밀탐지 수집으로 바꿔치기 되었습니다.

- 고무찬양 : 조카 박근홍 내외가 1979.3 신혼여행길에 인사차 집에 들렀기에 박영준의 앨범(일제시대에 여수어민훈련소 재직시 찍은 사진으로 누렇게 퇴색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었는데 조서에는 박경준이 박영준의 사진을 내놓고 “너희 아버지 (박영준)가 북에 살아 있단다. 똑똑하고 위대한 인물이다. 곧 밀고 내려와서 우리들 세상이 된다”는 등 고무찬양하였다고 어처구니 없는 조작을 하였습니다.

- 목포 뒷계 : 박동운이 1965.5 목포 뒷계를 통하여 박영준을 따라 월북하였다고 조작하였으나 목포 뒷계는 어선등 각종 선박이 변화하게 출입항 하는 곳이어서 목포시민이라면 목포 뒷계로 간첩선이 왔다고 하면 한 사람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 2차 월북 : 1971.10.3 박동운이 박영준을 따라 2차 월북하였다고 조작하였으나 그때가 바로 추석이라 대구 (풍국제지 출장소)에서 고향 진도에 내려와서 5촌 박선준과 성묘를 하고 몇일 뒤 대구로 올라갔다고 박선준의 법정 증언이 있었으나 묵살되었고, 박동운과 동행한 친구 이정천과 대구 출장소 이모씨의 증인들도 미리 수사관들이 찾아가서 입을 막아 위증하도록 공작한 사실이 결국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 폭로 되었습니다.

- 회합 : 명절이나, 기제사 및 혼인등 가족이 모일 때라든가 출장차 지나다가 인사겸 방문하는 등 가족끼리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의례를 모두 간첩활동을 위한 회합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 위장약 : 박화룡(부친)이 위장병으로 수년 고생하고 있을 때 본인의 처남 한호 (당시 군의무대 복무)에게 부탁하여 위장약 암포젤엠(미제)을 구입하여 부친께 드렸는데 이것을 박영준이 북에서 가져와서 주었다고 꾸며 놓았습니다.

- 금개람약 : 이수례는 27세로 청산과부가 되어 오늘까지 정절을 지키며 바르게 인생을 살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사도 모르는 남편 박영준이 북에서 내려와 하루밤 잠자리를 같이하고 어린애를 임태하여 금개람약(마라리아약)을 먹고 유산시켰다는 기상천외의 비인도적 작태로 범죄를 조작하였습니다.

- 7번이나 남파하다 : 조서에 의하면 박영준이 일곱번이나 남파한 것처럼 조작하였고 특히 그 시기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1971.9 ~ 1971.12 사이 연거푸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박영준의 남파일시〉

남파일자	만난가족	박동운 월북	비고
1957.7. 초순 일자미상	이수례, 박화룡		
1963.8. 하순 일자미상	박동운 박경준 박근홍 이수례		
1965. 5. 중순 일자미상	박동운	박동운 1차월북 목포 죽교동 뒷계해안에서 공작선 승선	
1971.9. 하순 일자미상	박동운 박경준 이수례	박동운 2차월북 진도 조도 하조도 선착장에서 승선	
1971.12. 일자미상	박경준		
1976.10. 중순 일자미상	박동운 이수례		
1979.8. 중순 일자미상	박동운		

* 허탈과 자포자기

인간의 인내력은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60일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갖 고문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할 수가 없어서 허탈과 생의 포기 상태로 빠져들어 갔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밀물처럼 조여 오는 압박과 공포, 위협으로 부터 단 1초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허위 조작된 조서에 날인 하는것 뿐 아니라 더한 것 이라도 모두 죽어버리고 포기하고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유도고문으로 그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 부쳐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만사포기하고 수사관 하자는 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1981.5.8 60일만에 구속영장을 떼어 그 지긋지긋한 안기부지옥에서 서울 구치소로 이감을 가고보니 구치소는 안기부에 비유할 때 마치 안방같은 안도감을 잠깐 맛보았을 정도였습니다.

* 간첩을 조작한 공로로 포상한다.

아무죄없는 선량한 국민을 강제로 끌어다가 60여일간 감금하여 놓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죽을 고문을 하여 관제간첩을 만들어 놓고 수사관들이 하는 말 “이번에 큰일을 하고 실적을 올렸으니 누구는 표창을 받고 누구는 승진하고 포상금을 타고, 때는 봄이라 위로금으로 화전놀이를 가는데 누구누구의 차를 동원하고 누구는 무엇을 준비하라”는 등 비인도적 만행을 눈도 깜짝 않고 식은 죽 먹듯 자행하고 있으며 무고한 국민은 죄를 뒤집어 씌워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으로 보내고 가해자는 영광과 명예를 한 몸에 안고 꽂 놀이를 간다니 ?

우리는 구시대가 저지른 불법적, 비인도적 인권탄압의 과오를 덮어 둘 수 없습니다. 과감히 파헤쳐져 과거를 청산하고 새시대가 열리는 민주역사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이라 생각합니다.

05질의서 진술인박동운 질의사항

연행 · 수사과정

1. 진술인은 농협 진도군지부 예금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1년 3월 7일 새벽 6시경 진도 자택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로부터 국가안전기획부 남산분실로 연행되었는데,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거나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에 관해 고지를 받았는지, 연행과정에서 불법적인 폭행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2. 진술인은 1981년 5월 8일 무려 63일 동안 안기부에 불법 구금되어 각목 등으로 구타하고, 라이터로 온몸을 지지며, 성기고문까지 하는 등 갖은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고문 내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지요

3. 진술인은 안기부 수사를 받고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된 후 검찰 공안부에서 당시 안강민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진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4. 1차 월북(1965. 5.중순 ~ 5월 하순)

(1) 공소사실에 의하면 진술인의 아버지가 진술인이 고3 때인 1963년에 목포 자취방으로 한밤중에 찾아왔고, 목포에서 대학재수 할 때인 1965년에 다시 찾아와 다음날 목포 뒷계 해안을 통해 공작선을 타고 월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2) 안기부에서 처음에는 진술인을 포함한 가족 7명 모두가 아버지를 만나 월북한 것으로 몰고 갔다가 여의치 않자 나중에는 진술인만 월북한 것으로 하고, 아버지를 만난 날짜도 자기들 맘대로 바꾸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5. 2차 월북 부분(1971. 9.하순 ~ 10. 24.)

(1) 1971년 9월경 2차 월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인이 당시 추석인 10. 3.경에 성묘를 위해서 친구 이정천과 함께 진도까지 동행했고, 당시 직장인 풍국제지 대구출장소에서 10. 말까지 일하다가 그만두면서 회사 동료인 이택열과 함께 대구에서 전주, 이리까지 함께 동행하였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2) 당시 이택열은 법정에서 진술인과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 그 내용 및 이택열이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지요

(3) 당시 출장소장이었던 이송열은 법정에 나와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던데요?

(4) 기타 진술인이 당시 월북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신가요(세대별주민등록표 : 1971.

10. 14.자 '본적지로 퇴거' 기재)

(5) 수사기관 발표대로라면 아버지가 남파간첩으로 수십년간 고향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것인데, 진술인이 징역형을 받은 이후 실제로 아버지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진술인이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6. 간첩행위(군사기밀 누설 등)

(1) 공소사실 중 진술인에게 적용된 간첩행위란 북한에 진술인의 군복무경력, 부대인원, 장비위치, 훈련내용 등을 보고하는 등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2) 진술인이 농협 복사기로 대차대조표, 인사기록카드, 손익계산서 등을 복사해주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농협에는 복사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5. 진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사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는데, 당시 진술인은 안기부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고 검찰에서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그대로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었지요

6. 진술인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증거 중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된 것이었나요

7. 진술인이나 동생 박근홍, 박미심, 한동자 등이 법정에서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상 반성문과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8. 항소심에서 당시 진술인의 담당변호사가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수사에 의해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조작되었다며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진술인과 가족 5명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9. 1심 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진술인 등의 무죄 호소 및 고문조작 호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리하였다가 예컨대 진술인이 고문에 못이겨 안기부와 검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0. 결국 안기부에서 허위자백 끝에 작성된 자술서가 그대로 검찰의 공소장이 되었고, 1심 법원의 판결문은 검찰 공소장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고 하는데 진술인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재판과정

당시 1심법원이 진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에 대해서 하나씩 묻겠습니다.

1. 사건 초기 안기부는 이 사건을 '진도가족간첩단사건'으로 언론에 발표하면서, 증거물로 난수표, 무전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간첩사건에 흔히 증거물로 제시되는 난수표, 권총, 무전기 등이 전혀 증거물로 제출되지도 않았지요.

2. 압수된 증거물 중에서 '자귀 1자루'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경위로 나온 증거입니까

3. 압수된 증거물 중에서 '사진첩 1권'은 무슨 사진들이고 어떤 취지로 압수된 것입니까

4. 압수된 증거물 중에서 '수첩 1권'은 진술인이 대구에서 일할 때부터 사용하던 것으로서, 수첩 내용을 보면 진술인이 월북하였다는 1971. 10. 경에 진술인이 풍국제지에 근무한 사실이 쓰여 있어서, 오히려 진술인에게 유리한 증거였다고 하던데요

06사건실상 조작간첩사건 실상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정리

5.6공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는 6.25 전쟁당시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 이들이 별안간 '간첩단' 이 되어 수십 명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여 간첩이 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 등, 의혹투성이의 '간첩사건' 이 줄을 이었다.

70년대 초는 국제적으로 오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데탕트시대가 막이 오른 시기였다. 또한 북한도 노동당 제5차 대회를 거치면서 대남 공작을 전면 수정하여 더 이상 공작원을 내려 보내지 않게 된다. 이는 공안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상식화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후반기와 전두환 정권 시절을 거슬러보면 간첩으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급증했다. 한쪽은 보내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왔다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아래 <표1>를 살펴보면 두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75년 이후 남파공작원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1951~1987년 사이 발표된 남파관련 사건 61건 가운데 75년 이후 발생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치적 시기마다 '간첩이 엄청나게 출현한다'는 것이다. 가령 1971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살펴보면 남파사건이 2건인데 반해 그외 간첩사건은 9건으로 기록되었다. 1971년에는 박정희 정권이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했으며(10월 15일), '학원질서 확립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을 공포(10월 9일) 했다. 뒤이어 1971년 12월 6일 비상사태 선포,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했던 공포의 정치 시기였던 것이다. 또한 5공 전두환 정권시기를 살펴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 오히려 '간첩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82년 13건, 1983년 15건, 1984년 14건, 1985년 26건, 1986년 11건 등이 발생했는데, 특히 1983년 이후에는 '남파공작원 사건'이 단 한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반면, 일본관련, 재일동포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간첩사건을 발생시켰던 1985년은 김대중의 미국에서의 귀국, 1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신민당 중심의 야당통합 합의 등 정치적으로 매우 주요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였다.

이들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자신을 연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욕설과 구타를 당하며 끌려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연행되었으며, 모두 영장 없이 불법체포, 구금되었다.

둘째, 구속영장도 없이 60~180일을 불법구금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간 동안 가족, 변호인과의 접견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으로 이어지는 고문수사를 받았다.

넷째,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물은 스웨터, 여권(강희철씨), 낡은 개인수첩 2권(석달윤씨), 망치1개(박동운-무전기를 부순 도구라는 것임), 100원짜리 지폐 한 장(정영씨-공작금이라고 발표), 선원수첩 2권(최해보, 유종안씨), 여행안내도(신귀영씨) 등으로 직접적으로 간첩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증거물조차 없는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작성된 본인의 자술서만이 유일한 증거였다.

다섯째, 이들이 수집·탐지·누설했다는 국가기밀의 내용은, 관광여행 중 여행안내원으로부터 들은 '경부고속도로는 전쟁 시 군용도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성우씨), 친구 아들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육군행정학교 출입 절차(김윤수씨), 종로서적과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합법출판물(황대권씨),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된 학생시위 광경(김성만씨), 광주항쟁자료집(강용주씨)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들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기밀이 된다며 국가기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아 그야말로 '간첩'을 양산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대부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십여 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해

(표1) 사건발생 연도별로 본 장기수 유형

유형 연도	월북자 가족 사건	월남자 가족 사건	남북 어부 사건	제일 동포 사건	일본 관련 사건	민주화 운동 유학생	월북 기도 유학생	조직 사건	남파 공작원	개별 국보 미학인	계
계	14	2	16	17	39	8	8	15	61	36	216
51								3		3	
52								1		1	
53								1		1	
54											
55								3		3	
56								1		1	
57								3		3	
58								3		3	
59								5		5	
60								1		1	
61								5		5	
62								3		3	
63								2		2	
64								1		1	
65								1		1	
66	1							3		4	
67								1		1	
68								2		2	
69								1	11	3	15
70	1	1						1		3	
71	1	1	1		1	1	2	4		11	
72			1				3	1		5	
73			1							1	
74			2	1			6	1		10	
75			1	1		1		1		4	
76			1							1	
77	1	2	1							4	
78							4		2	6	
79					1				3	4	
80	2				1				1		4
81	1	1	3	1		1				7	
82	2		2	1	6			2		13	
83	1	1	2	7				4		15	
84		4	2	3		1		2		14	
85	2	1	2	2	7	6	1		5	26	
86			2	5	1	1			2	11	
87				1	1				1	3	
미학인	1		2	2		2	2	2	10		19

야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시점의 문제와 더불어, 체포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로 점철되어 있으며, 혐의사실 자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칭하여 “조작간첩 사건”이라 부른다. 이러한 조작간첩 사건은 체포,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국 가보안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장없는 불법체포와 불법구금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들이대는 권총의 위협을 받으며 강제로 끌려간 조상록 씨(재일유학생 간첩사건),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후 행방불명된 나종인 씨(월북자가족 간첩사건), 먼저 연행한 부인 때문에 끌려갔던 이현치 씨(재일교포 간첩사건),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연행된 강용주 씨(구미유학생 간첩사건), 출산예정인 부인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납치된 김장호 씨(재일교포 간첩사건), 이들은 한결같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연행 되었다.

5. 6공 군사독재 시절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조작간첩사건’ 관련자들은 영장은커녕 무슨 이유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납치’ 되듯이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 수사기관으로 끌려갔다. 무슨 영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폭력과 협박, 그리고 두 눈이 가린 채 차에 치박혀 끌려가는 동안 공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 누구도 자신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불안상태는 극도에 다다르게 된다. ‘조작간첩’ 사건에서는 인신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불법체포이 관행일 뿐이었다.

위와 같은 불법체포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60일에서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되는 조사과정으로 이어졌다.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구금은 사실상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법구금으로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관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불법구금의 목적은 자백을 얻어내는 데 있다.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자백이 유죄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진술 이외의 다른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자백을 획득하기 위해 고문 등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고문과 사건조작

‘조작간첩’ 사건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꼼짝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런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간첩’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들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물적 증거가 아니라 자백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진술조서를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밀실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갖가지 형태의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고문은 그 방법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다. 잠안재우기, 구타, 비녀꽂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 직접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서부터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미끼로 정신적인 협박을 가하는 고문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

일반적으로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체포·연행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도착하자마자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군복으로 갈아 입혀지고 곧바로 구타를 당하면서 고문이 시작되었다. 수십일 동안 밀실에 감금된 채 고문—허위자백

〈표2〉 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불법구금 사례

이름	연행일자	구속영장발부일자	불법구금기간	구금장소
신귀영	1980. 2. 25.	1980. 5. 3.	68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석달운	1980. 8. 21.	1980. 10. 6.	47일	중앙정보부(현 안기부)
박동운	1981. 3. 7.	1981. 5. 8.	63일	국가안전기획부
나진	1981. 3. 26.	1981. 6. 22.	89일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
송기복	1982. 3. 2.	1982. 6. 26.	117일	국가안전기획부
함주명	1983. 2. 18.	1983. 4. 4.	46일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양동화	1985. 6. 2.	1985. 8. 5.	65일	국가안전기획부
황대권	1985. 6. 4.	1985. 8. 5.	63일	국가안전기획부
김성만	1985. 6. 6.	1985. 8. 5.	61일	국가안전기획부
김양기	1986. 2. 21.	1986. 4. 5.	44일	보안사 광주분실

—번복 ·고문을 거듭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자술서를 쓰고 외우고 그러다 틀리면 바로 고문이 이어지기를 수차례 거듭한 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끔찍한 상황은 끝이 났다.

이러한 고문으로 인해 없는 사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간첩행위로 둔갑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문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이 반복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착각이 들 정도'가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내가 받은 고문은 이렇다!

〈사례 ①〉 내가 그런 사실이 죽어도 없다고 부인하자 "모든 것을 김근희와 김태희가 전부 네가 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서부경찰서에서 옥인동 대공분실로 옮겨놓고 본격적인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몽둥이와 주먹, 구둣발로 구타는 한달 동안 당한 일이고 소위 '칠성판' 이란 것에 묶어 놓고 고개를 젖히고 코에 물을 붓는 물고문, 겨자를 물에 타서 코에 붓는 겨자 물고문, 양손에 수갑을 꽉 채우고 수갑사이에 줄을 묶고 누운 상태에서 끌면서 혼들면 온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비비틀리는 고문, 잠안재우는 고문... 그 무더운 복중에 물 한모금 밥한술 주지 않아 3일동안 굶기니 입안의 혀는 돌멩이처럼 굳어 움직이질 않고 입술은 붙어서 얹기로 잡아떼니 피가 낭자하게 흘러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고문을 받을 그 당시에는 만사가 귀찮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과 마주앉아 조서를 작성하며 책상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사람소리에 주위를 돌아보니 차안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병원에서 머리를 치료하고 다시 조사실에 돌아오니 수사관들은 '김일성이가 잡히면 자결하라고 했지' '여기서는 네방대로 죽을 수도 없다'면서 협박했습니다. 40여일간 고문을 받으면서 내 정신과 몸을 수사관에게 맡기고 하루빨리 죽는 것만이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살할 기회만 엿보았고, 수사관들이 쓰라는 대로 쓰고 지장도 강제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58년 납북시 노동당에 가입하고 귀환하여 24년동안 간첩을 한 사람'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김정묵씨 사례)

〈사례 ②〉 구둣발, 몽둥이, 주먹으로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10일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주지 않으면서 무릎을 끊거나 채 양 무릎사이에 야전침대 받침대를 끼우게 하고 허벅지를 구둣발로 밟거나 몽둥이로 때리고 벽 모서리에 세워놓고 황소만한 수사관들 너댓명이 몰매를 때렸습니다. 몇번이나 까무러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마다 의사가 와서 눈을 뒤집어 보고 '너이상 수사를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고문을 중단한 것만 해도 몇 번이나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며칠이고 세워놓

고 얼굴, 가슴, 배, 다리를 무차별로 때리는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그저 죽어야지만 이 악몽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기에 머리를 처박고 죽으려고 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법은 수사관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밖에 없어 시키는 대로, 부르는 대로 자술서를 쓰고 말았습니다(유정식씨 사례)

〈사례 ③〉 함께 연행된 집안식구들은 20일에서 70일 동안 부산시경에 구속영장 없이 불법감금 되어 물고문, 전기고문, 고추가루고문, 통닭구이, 비녀꽂기, 구타, 맨치로 발톱뽑기, 잠안재우기 등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함께 연행된 사람들 중 선원으로 일본을 드나들었던 저와 오촌야저씨 되는 신춘석씨, 사촌매제 서성칠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간첩임을 허위자백하고 말았습니다(신귀영씨 사례)

〈사례 ④〉 인천 안기부에 도착하자마자 수사관들은 내 옷을 모두 벗기고 곤봉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면서 본격적인 고문수사를 시작하였다. 수사관들이 집중적으로 고문한 내용은 내가 북한에 피납되었을 때 '정진구와 만난 사실과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만난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재당숙을 북한에서 만났다는 안기부의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어 명하니 앉아 있었더니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서 말을 안한다'고 하면서 손과 발을 잡고 야전침대 받침대로 엉덩이, 허벅다리 등을 무차별 폭행하여 견디다 못해 실신하기도 했다(정영씨 사례)

〈사례 ⑤〉 나의 얼을 완전히 빼놓기 위해 그들은 처음 3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다. 또 물도 주지 않았다. 한 나약한 개인으로서 '국가 위의 국가'라는 거대한 기관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다는 위축감, '날오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기관의 무소불능함이 더욱 나를 절망하게 했다... 하루는 수사계장이 자기 동료 수사관이 퇴근하고 난 뒤 따로 나를 지하 2층의 목욕탕으로 데려갔다. 가는 동안 나는 수건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으며 그의 손에 이끌리어 더듬더듬 2층 지하로 내려갔다. 캄캄한 목욕탕에 들어가자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육조에 눕혀졌다. 그는 나의 얼굴을 불들고 그 위에 물 적신 수건을 덮은 뒤 사정없이 샤워를 틀어댔다. 물 묻은 수건은 곧 나의 입과 콧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나는 질식 직전의 상태에서 심하게 발버둥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발버둥치자 같이 따라온 수사관은 구둣발로 나의 등을 사정없이 찍어 차면서 "너같은 놈은 이리다 죽어도 별볼일 없어. 심문투쟁하다 죽어버렸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하며 협박을 하였다(황대권씨 사례).

간첩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① 죽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결국 수사관들 요구대로 진술서 작성 - 정영 사례

수사관들은 나를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무전교育은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접선은 후레쉬로 깜박인다고 가르쳐 주었고, 밤낮 구별 없이 매태작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보니 결국 간첩이 되어 버렸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고문 끝에 수사관들이 불러 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나중에 그 진술서 그대로 공소장이 만들어졌고 법정에서 나는 고문에 의해 조작된 공소장이라고 결백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허위자백 한 것을 작성케 하여 세뇌...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들어 - 양동화 사례

6월 15일경 갑자기 국군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합동수사를 한다며 함께 수사하기 시작했다. 보안사 수사관들이 합동조사에 참여하고부터 나와 관련된 피의사실이 더욱 과장되어졌다. 고등학교 후배와의 만남은 학생운동을 주하기 위한 것으로, 후배와 농담으로 오고 간 모든 얘기들이 시위 예비음모로 조작되어 버렸다. 구타와 협박, 기합으로 피폐해진 심신은 저항을 할 기력조차 상실하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치 로보트처럼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한 것을 수백장의 자술서로 작성케 하여 세뇌시켰다. 쉴새없이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쓰지 않으면 다시 구타가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자 그들이 강요했던 허위사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③ 안기부에서 2달은 간첩임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기 위한 사투의 시간-황대권 사례

수사관들에 못이겨 내 스스로 꾸며낸 이북방문 이야기가 너무 상식적이고 추상적이었는지 수사관은 “아직 맛을 덜 보았다”며 옆에 세워 둔 각목을 들어 머리통을 두어 번 후려갈기고 나서는 나의 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만연 제대로 이야기 안 하면 각목으로 그대로 내려친다고 위협하였다. 내가 극도의 공포로 머뭇거리자 그는 실제로 각목을 크게 휘두르더니 터지지 않을 정도로 내려쳤다. 그는 다시 “이번에는 진짜야” 하며 또 각목을 치켜들었다.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자 나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고문도 받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로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고문, 허위자백, 번복, 고문, 허위자백, 번복, 고문.... 이러한기를 몇차례. 한마디로 안기부에서의 두달은 끝없는 반복 서술과 고문을 통하여 자신이 간첩임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기 위한 사투의 기간이었다.

④ 고문으로 시인, 질문, 대답 못하면 고문, 단 가르쳐주고 또 물고, 고문 -함주명 사례

이근안이 몸을 풍꽁 묶어서 칠성판 위에 눕히고 새끼발가락에 전선을 이어서 전기고문을 했습니다. 다른 형사들은 전기가 잘 통하게 발가락에 물을 뿌리고 이근안은 죽지 않게 눈도 뒤집어 보고 전기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전기고문을 하면서 ‘지령을 받고 간첩이 되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떻게 말해야 간첩한 것이 되는지 몰라 망설이니까 “생년월일이 몇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생일을 말해주니까 생일을 따서 당증번호로 만들고 다시 간첩 했으면 어디로 보고했을 것이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아무말도 못하니까 칠성판 위에 온몸을 묶고 수건을 입에다 얹고 샤워기를 틀어 놓았습니다. 물이 들어와 숨은 쉴 수도 없고 새끼발가락에는 전기고문까지 겹쳐서 죽을 것 같아서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근안이 풍꽁 묶인 가슴 위에 올라앉아 꼼짝 못하게 하니까 물을 그대로 들이마셔 기절해 버렸답니다. 형사들은 내가 기절하자 눈을 뒤집어 보고 전기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찾으니까 서울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는 산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인왕산을 손으로 가리키자 그곳을 무인포스트로 지정하고 북한에 간첩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물고문, 전기고문이나 10일간 잠을 전혀 안재우고 백열등을 쳐다보게 해서 출기만 하면 빨래방망이로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들을 영장도 없이 치안본부로 데려다가 가둬놓고 잠도 안재우고 간첩했다고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⑥ 수사관이 말해준 것을 물어보고 모르면 고문하고 가르쳐 주고 -김양기 사례

물고문과 전기고문은 서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철제 의자에 앉혀 온 몸을 의자에 묶은 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다음 10리터 짜리 흰 주전자로 물을 부어대고. 고춧가루를 콧 구멍에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 온몸이 타들어 가는 것 같고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기절해 버리면 다시 깨워서 온 몸이 홍건하게 젖은 것을 이용하여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전원을 연결하여 전기고문을 하였다. 북한에 갔다 왔다는 것을 받아내려고 이 점을 중점으로 고문, 고문에 못 이겨 입북했다고 하면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기와집하고 논하고 들판을 보았다고 대답하자 “담배는 뭘 피웠느냐”고 물어보아 “모른다”고 대답하자 다시 고문을 하고 정신을 잃게 한 후 다시 깨어나니 다른 한 명의 취조관이 나타나 “북한에는 금강산이나 영광이라는 담배가 있다”고 이야기 해 주면 그 중의 하나를 피웠다고 하는 식으로 대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고 모르면 고문하고 가르쳐 주고 하는 식으로...

초록은 동색인가 - 검찰조사와 재판

저는 순진하게도 안기부에서 조작된 것을 검사에게 말하면 억울함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더 하더군요. 조서나 자술서가 아니라 안기부가 만들어보낸 ‘의견서’라는 것만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고, 내가 부인하면

조서작성을 중단한 채 ‘안기부로 다시 갈 것이다’면서 육박질렀습니다. 모든 조서는 검찰청이 아닌 구치소에서 꾸미는 중이고 가족면회도 안되는데다가 안기부의 수사로 인한 위축감과 자포자기 심정인지라 검사의 협박은 무엇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모든 걸 체념하고서 검사가 ‘의견서’를 보면서 불러주는 대로 대답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소장이 안기부가 작성한 ‘의견서’와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게 내가 ‘간첩’이 되어있다는 사실만큼 놀라웠습니다(강용주씨 사례).

위와 같이 불법체포되어 4, 50일에 이르는 불법감금된 채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된 이들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검찰에서의 번복을 우려하여 송치 전에 피의자에게 “허튼 소리하면 다시 데려와 혼내 주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거나, 때로는 검찰 조사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태로 진행되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송치된 이후 3차례 안기부에 불려가서 “그렇게 고문을 하고서도 모자랐는지, 다시 때리면서 남은 조사와 글쓰기를 했다”는 김장호씨(재일교포 사건), 구치소에 수감된 후 보안사에 두차례 끌려가 ‘검사취조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들었다는 이현치 씨 등. 조작간첩 장기수 대부분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으로 다시 불려가 구타와 협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수사관의 감시와 검사의 협박 속에서 작성된 공소장은 수사기관에서 꾸민 조서, 진술서, 의견서와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물들은 하나같이 직접적인 간첩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V자 스웨터, 여권(강희철씨), 낡은 개인 수첩 2권(석달윤씨), 망치 1개(박동운씨-박씨가 무전기를 부순 도구로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100원짜리 지폐 한장(정영씨-받았던 공직금 일부라고 발표) 선원수첩 2권(최해보, 유종안씨), 여행안내도(신귀영씨), 영사증명서(장의균씨) 본인의 명함판 사진 1장(조상록씨)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증거물조차 아예 없는 사람들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작성된 본인의 자술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유일한 증거였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왔으며,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공범자들이 모두 자백한 경우에 그중 1인의 자백이 타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다른 증거가 없어도 공범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의 판결문은 안기부의 ‘의견서’나 검사의 ‘공소장’과 글씨 하나 틀리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국가기밀의 문제

조작간첩으로 구속된 장기수들이 수집, 팀지, 누설했다는 국가기밀 내용을 살펴보면 황당무계하기 짙이 없다. 74년 재일교포 모국방문단 관광여행중 여행안내원으로부터 들은 ‘경부고속도로는 전쟁시 군용도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성우씨), 친구 아들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육군행정학교 출입절차(김윤수씨), 종로서적과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합법출판물(황대권씨), ‘민방위 훈련은 한달에 1번 한다’(구명우씨),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된 학생시위광경(김성만씨), 광주항쟁자료집(강용주씨) 등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을 알게 된 것 까지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기밀이 된다고 본 법원의 국가기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첩’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대부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십여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것이다.

07피해자명단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명단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작성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조사기관	불법구금일	석방일
1	강용주	전남대	구미유학생사건	1985-08-05	안기부	35일	99.2.25.
2	김성만	연세대졸	구미유학생사건	1985-08-05	안기부	60일	98.8.15.
3	양동화	조선대	구미유학생사건	1985-08-05	안기부	65일	98.8.15.
4	황대권	서울대졸	구미유학생사건	1985-08-05	안기부	62일	98.8.15.
5	김영일		납북어부사건	1982-04-23	광주보안대	40일	10년형
6	김정묵	어부	납북어부사건	1982-07-04	서울시경(옥인동)	40일	98.8.15.
7	이상철	대우조선근무	납북어부사건	1983-12-21	보안사(경남)	37일	98.8.15.
8	이성국		납북어부사건	1981-00-00	충남서산경찰서	89일	10년형
9	정삼근		납북어부사건	1985-07-15	보안대(전주)	52일	7년형
10	정영	인천제철근무	납북어부사건	1983-09-13	안기부(인천)	40일	98.8.15.
11	안희천	어부	납북어부사건	1978-00-00	중앙정보부		
12	김이남		납북어부사건	1976-04-01	목포경찰서	72일	20년형
13	김홍수		납북어부사건	1977-08-24	경기도경대공분실	2개월	15년형
14	김광호		리비아취업	1983-04-15			
15	함주명	회사원	월남자사건	1983-02-18	치안본부(남영동)	45일	98.8.15.
16	김요한	군인	월북기도	1980-05-10	보안대		15년형
17	최수열	군인	월북기도	1987-06-22	보안대		98.8.15.
18	강희철	회사원	일본관련사건	1986-04-01	제주도경대공분실	105일	98.8.15.
19	고창표		일본관련사건	1983-11-01	안기부	70여일	
20	구명우		일본관련사건	1986-04-29	치안본부(남영동)	40여일	
21	김기문		일본관련사건	1989-05-16			98.8.15.
22	김동주		일본관련사건	1983-04-20	안기부	49일	10년형
23	김성규		일본관련사건	1983-03-10	안기부	60여일	
24	김순일	재일교포	일본관련사건	1986-8-00	보안대(송파)		
25	김양기		일본관련사건	1986-04-05	보안대(광주)	70여일	
26	김철	무역업	일본관련사건	1989-04-26	치안본부(남영동)	7년형	
27	문철태	전 고교교장	일본관련사건	1985-08-13			98.8.15.
28	서경윤	미장업	일본관련사건	1984-07-15			98.8.15.
29	서성칠		일본관련사건	1980-03-07	부산시경대공분실	30여일	
30	서순은	사업가	일본관련사건	1990-01-29	안기부		
31	송석민		일본관련사건	1983-00-00	안기부	60여일	
32	신귀영	원양어업	일본관련사건	1980-02-25	부산시경대공분실	68일	만기출소
33	신춘석		일본관련사건	1980-03-24	부산시경대공분실	40여일	
34	양승선		일본관련사건	1986-04-27	서울시경(옥인동)	72일	
35	양정이		일본관련사건	1982-09-01	안기부	90여일	
36	양희선		일본관련사건	1973-08-00	서울시경(옥인동)	60여일	
37	오주석		일본관련사건	1983-10-00	안기부	60여일	
38	유재선	사업가	일본관련사건	1983-11-12	안기부		98.8.15.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조사기관	불법구금일	석방분류
39	유종안	선원	일본관련사건	1985-03-18	치안본부		
40	이성희		일본관련사건	1974-03-15			
41	이순희		일본관련사건	1982-06-00	서울시경(옥인동)	25일	
42	이장형	사업가	일본관련사건	1985-06-15	치안본부(남영동)	67일	98.8.15.
43	정금란		일본관련사건	1984-05-25	제주대공과	30일	
44	조봉수		일본관련사건	1984-10-16			
45	조원삼		일본관련사건	1985-11-05	안기부	36일	10년형
46	차풍길		일본관련사건	1983-03-11	안기부	66일	10년형
47	최선웅	동아대, 출판인	일본관련사건	1986-01-30		70일	만기출소
48	최해보	원양어업	일본관련사건	1985-03-30	치안본부	61일	
49	김윤수	현대건설	일본관련사건	1985-06-24	보안사		15년형(만기출소)
50	구명서		일본관련사건	1985-10-26	보안대(서빙고)		
51	김장길		일본관련사건	1981-05-12	안기부	45일	10년형
52	유정식	건대졸, 축산업	일본유학관련	1975-03-02	중앙정보부		98. 3. 13
53	장의균	출판업	일본유학관련	1987-07-05	보안사(송파)	30일	만기출소
54	조상록	경희대	일본유학관련	1978-01-15	중앙정보부	17일	99. 2.25
55	이병설	서울대 교수	일본유학관련(전집배기)	1986-07-15	안기부	21일	형집행정지
56	나진		남매간첩사건	1981-06-22	서울시경(옥인동)	90여일	
57	나수연		남매간첩사건	1981-06-22	서울시경(옥인동)	90여일	
58	김순일	재일교포	재일교포사건	1986-06-00	보안사	38일	12년
59	서성수		재일교포사건	1983-08-15	보안사		20년형
60	김태홍	재일교포(연세대)	재일교포사건	1981-09-09	보안사	35일	98.8.15.
61	신상봉	재일교포	재일교포사건	1985-04-23	치안본부(남영동)		10년형
62	이성우	사업가	재일교포사건	1984-02-23	안기부		
63	이현치	삼성전자근무	재일교포사건	1981-09-09	보안사(송파)	19일	98.8.15.
64	서승	재일교포유학생	재일교포사건	1971-02-00	보안사		
65	김병주	부동산업	재일교포사건	1983-11-28	안기부	59일	98. 3.13
66	김장호	실내장식업	재일교포사건	1982-12-10	안기부	51일	98.8.15.
67	박수관	식당업	재일교포사건	1983-03-25	서울시경(옥인동)		98.8.15.
68	서성수		재일교포사건	1983-05-15	보안사		20년형
69	서순택	사업가	재일교포사건	1990-01-19	안기부		98.8.15.
70	서준식	재일교포유학생	재일교포사건		보안사		1988.05
71	손유형	사업가	재일교포사건	1981-04-25	안기부	80일	98. 3.13
72	최철교	빠친코경영	재일교포사건	1974-04-00	보안사		
73	김태룡	국민대, 건설업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79-07-20	치안본부(남영동)	36일	98.8.15.
74	나종인	서울대졸, 사업가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5-04-20	보안사(송파)	3개월	만기출소
75	박근홍	수협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1-03-09	안기부	62일	3년6월형
76	박경준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1-03-09	안기부	62일	7년형
77	박동운	농협직원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1-03-09	안기부	62일	98.8.15.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조사기관	불법구금일	석방분류
78	석달운	농업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0-10-06	중앙정보부	47일	98.8.15.
79	안승운	극동건설직원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1-12-06	안기부	80일	98.8.15.
80	이준호	대우(경리부)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5-01-09			7년형
81	이창국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4-05-01	안기부	77일	
82	정종희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80-11-00	안기부		
83	진창식		행방불명자기족사건	1979-07-15			98.8.15.

* * 소속은 체포당시 직업을 말하며, 불법구금일수는 체포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08정혜신의 국가보안법 진단

빨갱이 강박증

2004년 9월 어느 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원로교사들이 쏟아놓은 참회의 육성은 가슴을 떠린다. 그들은 군사독재시절 '때려잡자 공산당' 따위의 맹목적 반공교육을 실시하는 게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이성을 말살하는 반민족·반통일 교육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과거가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그 참회록의 한가운데엔 학생과 선생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았던 정해숙씨는 "국보법이 악법인 이유는 고문이나 징역같은 한 피해자의 고통때문이 아니라 그 법이 우리 사회를 온통 불신과 공포, 비겁함과 거짓으로 가득차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국보법을 단 한 줄도 고칠 수 없다는 국회의원에서부터 예전같으면 사형선고도 가능했던 송두율 교수 같은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날만큼 현 정부의 국보법 적용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수구언론까지 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집요하고 완강하다. 내가 보기엔 사생결단으로 국가보안법 수호를 외치는 이들의 심리적 근간은 '레드콤플렉스'다. 콤플렉스란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적인 편견이다. 그들의 일반적 정서는 과장된 두려움과 부풀려진 걱정이다.

콤플렉스는 사람의 감정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하나의 원초적 사건을 핵으로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한 심리적 내용들을 집합시키고 연결시키는 배열력을 발휘한다. 강력한 자석 주위에 광범위한 자장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레드콤플렉스를 유발시킨 원초적 사건은 한국전쟁이지만 사람들은 빨간색과 연관된 모든 일에 과민해 진다. 콤플렉스는 강박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 잡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레드콤플렉스에서도 그런 특성은 여지없이 발휘된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는 빨갱이에 대한 단순공포증세를 넘어 강박증 수준의 빨갱이 공포를 보인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높은 곳을 피하면 그만인 것처럼 단순공포증 환자는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을 피함으로써 공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포감을 동반한 강박증 환자는 공포를 없애기 위해 일종의 '의식'에 몰두한다. 예를 들어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가진 강박증환자는 에이즈 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씩 몸을 박박 씻는 상징적인 '의식'을 거행한다. 그들은 단지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구체적 행동만으로는 자신의 공포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느낀다. 공포의 대상이 외적인 실체가 아니라 주관적이고도 심리적인 무엇이기 때문이다. 빨간색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은 내적 공포가 엄습할 때면 꺼내들어야 할 병적인 '의식'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식'은 순간의 공포를 줄이는 역할은 하지만 몸을 씻다보면 하루해가 저문다는 강박증 환자처럼 우리의 일상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국보법이 제정될 당시의 법무장관의 말처럼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였다. 그런 한시적 성격의 법률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56년간이나 지속한 것도 모자라 미래에도 온몸을 바쳐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은 에이즈에 대한 심리적 공포를 몸을 씻는 물리적 행위로 막으려는 주술적 신념과 다르지 않다. 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지만 그것은 단물이 빠진 껌을 벽에 붙였다가 다시 떼어서 입에 넣고 씹는 일처럼 추레하고 부적절해 보인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국보법 폐지 반대에 올인하는 듯한 이들의 행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콤플렉스에서 기인한 강박적 행동의 일종으로 해석하게 된다. 폐기해야 마땅하다.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9일 자)

준법서약제 폐지

가끔 상담실에서 가정폭력의 몸서리치는 사례를 접한다. 그 끔찍함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버지를 살해한 자식의 심정이나 남편을 죽인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을 정도다. 그런 짐승같은 인간들은 하나같이 복종을 강요한다. 가족들이 아무리 할 말이 있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네 잘못했습니다. 앞

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는 서약을 자신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복하게 한다. 폭력적 굴종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공안사범에 대한 준법서약제도 근본적 매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가 공안사범에 대한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해외에 체류 중인 일부 반체제 인사들의 경우 계속 준법서약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제도개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 단체들은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준법서약제도는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가 사상전향 제도를 폐지하면서 만든 것으로, 수감 중인 공안사범이나 시국·노동사범의 가석방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제도다. 한 인권운동가는 준법서약서가 폐지됨으로써 일제시대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으로부터 시작해 '사상전향'을 요구해 왔던 국가제도가 사실상 70년만에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한다. 준법서약제는 도입 당시부터 사실상 전향을 강요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준법서약제 폐지는 현 정부의 좌경적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법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검증장치마저 포기한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며, 일반 형사법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구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세상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구실로' 라니. 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지키는 일보다 더 큰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준법서약제 폐지가 앞으로 정권의 정체성 시비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선언적 독설도 서슴치 않는다.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은 고려해도 지나치다는 느낌을 자울 수 없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준법서약서 폐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정략적 혹은 비인간적인 태도다. 준법서약제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반대 여론은 필요 이상으로 부풀린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몇몇 언론이 법무부의 자연스러운 폐지 결정을 두고 교묘하게 '반대여론'을 부추긴다"는 한겨레 신문의 지적은 타당하다.

한 저명한 언론인은 자신의 기명컬럼에서 '어떤 도덕이나 법률보다 원초적이고 효과가 있는 약속이 바로 양심에 대한 약속'인데 준법서약도 자신의 양심에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이 제도의 폐지가 갈등의 씨앗을 던졌다고 말한다. 결혼서약이나 대통령 선서를 들먹이며 서약이 양심에 대한 신성한 약속임을 강조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똑같이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지만 대통령의 서약과 시국사범의 서약은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현 준법서약제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침해하는 강제서약이기 때문이다. 준법서약제가 폐지된 현실적인 이유는 형사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는 털끝만큼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권력에 굴종하겠다'는 맹세와 약속만 강제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46년 10개월간 0.75평의 공간에 갇혀 지냈던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선생은 혹독한 고문보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전향공작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증언한다. 영양실조로 입안이 다 헐고 잇몸에 피가 나 교도소 운동장의 풀을 뜯어 먹기도 했단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살인범이나 깡패출신 수형자를 통한 피비린내나는 끔찍한 태러가 계속되었다. 그에 굴복한 전향자가 몇 명 생기면 모두 강당에 집합시켜 그들을 연단에 세워 "이 사람은 과거를 뉘우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라는식의 발표를 하게 했다. 그래서 전향자 중에는 폭력과 회유에 무릅쓸었다는 굴욕감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

준법서약서를 쓰는 일은 곁으로 보기엔 종이쪽지에 서명하는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인간이 겪는 영혼의 상처는 깊고도 넓다. '수용의 원리'에 의하면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은 그 행동에 구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한 약속을 깨기가 쉽지 않다. 장기기증서약이나 금연서약처럼 자발적 서약에는 '수용의 원리'가 더없이 긍정적 이지만 준법서약제같은 강제서약일 경우 그것은 자기혐오의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월간 '말' 기자로 근무하던 중 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있다가 얼마전에 출소한 김경환의 말은 가슴을 울린다. "모두가 하더라도 나는 안한다"라는 자기 중심이 확고한 연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흩어지지 않으며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정부이며 운동이며 권력이며 종교인 한 개인을 어떤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상·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비상상황 하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절대명제에 비추어 본다면 준법서약제의 폐지는 늦었지만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결정이다. 습관적으로 딴죽을 걸 일이 아니다.

'형사정책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무 실효성이 없는 준법서약제의 폐지는 백번 잘하는 일이다.
(시사저널, 2003년 7월 24일자)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얼마 전 일흔을 넘긴 두 명의 미국인 성직자가 한국을 찾았다.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고문조작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유신정부에 의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됐던 조지 오글 목사와 짐 시노트 신부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과거 독재정권의 조작에 의해 많은 이들이 고통스럽게 희생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백발이 성성한 두 외국인 성직자의 중언을 들으면서 새삼 '과정'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그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에 대해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하루빨리 상처를 잊고 새출발하자며 은근하게 등을 떠미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지연된 애도반응(delayed mourning)'이라는 정신의학 용어가 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채 넘어가면 그 슬픔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왜곡된 형태의 슬픔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슬픔의 과정을 생략한 부작용이다. 강간당한 여자가 그 분노와 수치심 등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함께 할 사람이 없었을 경우 그 분노와 수치, 자기혐오의 감정은 뒤틀리고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결국 자신을 포함한 주변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역사의 정리에도 이 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슬픔이나 분노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비극적 사건들은 역사화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처럼 복수의 칼날을 벼린다. 그래서 화합과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과정을 생략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포크레이으로도 막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인호의 소설 "영혼의 새벽"에 나오는 한 구절처럼 내게 잘못한 어떤 이를 내가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대인처럼 독일인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용서는 자칫 블랙코미디가 될 수도 있다. 5공 시절, 민통선에서 농사를 짓던 김민기의 경험담이다. 어느 가을 추수를 끝냈는데 갑자기 전두환에 대한 미움이 솟구쳐 올랐단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는 전두환이 자신이 생산한 쌀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라서다. 분하고 황당한 마음에 불면의 밤을 보냈을 김민기의 괴로움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김민기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미움의 2분법적 한계에서 벗어났다지만, 이 대목쯤에 슬쩍 "그럼 전두환은 김민기의 그런 괴로움을 알고나 있었을까"라는 구절을 삽입하면 김민기가 겪었을 괴로움과 용서의 과정은 본의 아니게 혼자 북치고 장구친 꼴이 되어 버린다. 혹여 우리가 말하는 용서나 화합은 그런 식이 아닌가. 의문사위 한상범위원장은 "사람의 죄악을 함부로 용서해 주는 것도 죄악일 것"이라고 말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역사의 정리에는 피해자의 관용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加害자의 참회는 더 필요하다. 그게 바른 순서고 과정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중 8명은 사형선고를 받은지 20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장기복역 후 출소한 이들 중 5명은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생존자 중 일부는 아직도 고문으로 인한 척추장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돈을 딴 사람은 다 빼지고 돈잃은 사람끼리 남아서 치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새벽녘의 도박판처럼 그렇게 허망한 꼴을 또 볼 수야 없지 않겠는가.

(시사저널, 2002년 10월 31일자)